



## 양평 제11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

2016. 04. 29.

도시







## CONTENTS

- I. 양평 제11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결정안 제안사유
- II. 양평 제11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개요
- Ⅲ. 양평 제11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현황
- Ⅳ. 도시관리계획 환원 결정도
- Ⅴ. 우리구 검토의견

## I. 양평 제11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결정안 제안사유

## ■ 제 안 사 유

•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4조의3 제1항에 의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하여 양평 제11도시 환경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해 같은법 제 4조의3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#### ■ 사업개요

	위 치	영 <del>등</del> 포로13길 14일대
양평	면 적	46,727.6m²
11	용도지역	<del>준공</del> 업지역
구역	용도지구	일반미관지구
	사업방식	도시환경정비사업

#### ■ 위 치 도



## Ⅱ. 양평 제11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개요

#### ■ 추 진 경 위

2009. 5. 14

• 정비구역 지정

2009. 9. 18

• 조합설립 인가

2010, 5, 27

• 시업시행 인가

2015, 11, 19

• 조합해산 신청

2015, 12, 4

• 조합장 의견청취

2015, 12, 10 • 조합설립인가 취소

2015, 12, 24 ~ 2016, 1, 25

•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

#### ■ 해 제 요 건

구분	계	해산신청	해산반대 및 무응답
토지등소유자 동의율	242명	122명	120명
	100%	50.41%	49.59%

✓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16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 가 취소됨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를 결정

✓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던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시 설 등은 정비구역 해제와 함께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.

## Ⅲ. 양평 제11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현황

## ■ 정비구역 - 해제

#### ▶ 위 치 : 영등포로13길 14일대(양평동1가 148-8)

면 적	용적률	건폐율	시행방식	건립세대
46,727.6m²	230%	60%	도시환경 정비사업	610세대

## ■ 건축시설계획 - 해 제

구분		위 치	연면적	주 된	건폐율	용적률	높이
명칭	면적(m²)	11.51	(m²)	용도	(%)	(%)	(m)
택지-1	22,774.5	143일대	86,600	<del>공동</del> 주택	30	230	120m
택지-2	6,061.5	118일대	23,400	0077	이하	이하	이하
택지-3	4,911.0	116-1일대	30,600	산업시설	60 이하	400 이하	50m 이하
택지-4	337.2	216-2번지	870	노유자시설 (어린이집)	60 이하	400 이하	25m 이하
택지-5	508.4	217-17일대	2,400	종교시설	60 이하	400 이하	32m 이하
택지-6	254.3	217-1일대	350	노유자시설 (경로당)	60 이하	400 이하	25m 이하
택지-7	333.8	217-4일대	450	업무시설 (파출소)	60 이하	400 이하	25m 이하
택지-8	668.6	222-10일대	2,700	업무시설 (자치센터)	60 이하	400 이하	30m 이하
계	35,849.3	-	147,370	-		-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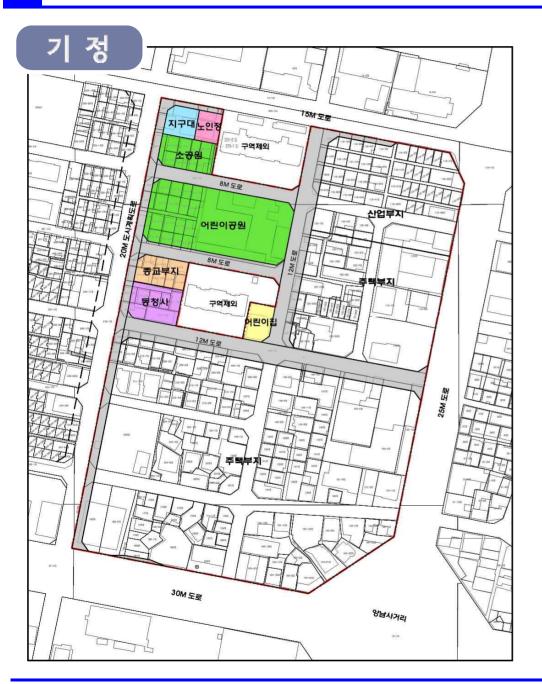
## ■ 용도지역계획 - 변경없음(준공업지역)

7 8	면 적 (m²)			
구 분	기 정	변 경	변경후	
준공업지역	46,727.60	_	46,727.60	
총 계	46,727.60	_	46,727.60	

## ■ 도시계획시설 - 환 원

구 분	면 적(m²)			
T E	기 정	변 경	환 원	비고
구역면적	46,727.6	감) 46,727.6	-	구역 해제
소 계	10,878.3	증) 385.8	11,264.1	
도 로	7,072.4	증) 2,724.3	9,796.7	환원
공 원	3,805.9	감) 2,338.5	1,467.4	환원

## Ⅳ. 양평 제11도시환경정비구역 도시관리계획 환원 결정도





## V. 우리구 검토의견

- 양평 제11도시환경정비구역은 구역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해산 신청이 접수되어 2015. 12. 10.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하고자하는 사항임.
-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던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시설 등은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 될 예정이나
- 현재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으로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16조의2 제1항에 의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에 의해 조합이 해산되어 정비구역해제 진행에는 법적 문제 없으나
-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에 정비구역해제 요청은 소송 결과에 따라 진행 할 예정임.





# 감사합니다